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84
----------	-------

발의연월일 : 2025. 7. 15.

발 의 자 : 차규근 · 신장식 · 서왕진
정춘생 · 황운하 · 김준형
강경숙 · 김재원 · 이해민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지배인 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그런데 문언상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무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함으로써 위험범처럼 취급되어 왔음. 이에 대해 기업의 경영자 등이 민사적 영역에서 업무상 배임죄 또는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배임죄에 대해 기업의 경영자 등이 민사적 영역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문언상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무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함으로써 위험범처럼 취급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배임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있고,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강력한 민사적 제재 방안이 취약한 상태에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방도는 더 이상 없을 것임.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 기업경영의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이 나서야 할 것이야말로 시장질서를 살리는 정책적 선택이기에 현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임. 배임죄의 남용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배임죄 자체의 폐기는 또 다른 편향을 낳을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개

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배임죄에 대한 「형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현행법상의 특별배임죄 조항의 구성요건도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임(안 제62조 및 제6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第622條(發起人, 理事 其他의 任員等의 特別背任罪) ① 會社の 發起人, 業務執行社員, 이사, 집행임원, 監査委員會 委員, 監事 또는 第386條第2項, 第407條第1項, 第415條 또는 第567條의 職務代行者, 支配人 其他 會社營業에 關한 어느 種類 또는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の 利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利益을 取得하게 하여 會社에 損害를 加한 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u> ② (생략) <u>第623條(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等의 特別背任罪) 社債權者集會의 代表者 또는 그 決議를 執行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の 利益을 取하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利益을</u>	<u>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①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현행과 같음) <u>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u>

<u>取得하게 하여 社債權者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 以下 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으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써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u>
--	---